

# 학술연구위원회 운영규정

전문개정 2019.05.22., 개정 2020.03.30. 개정 2022.03.04.

## 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혜전대학교 교원의 창의적인 학술연구 활동을 진작하고 효율적인 연구 지원 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학술연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조 (기능)

위원회는 다음 각 호 중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한다.

- ① 연구 활성화 방안 및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
- ② 연구과제의 선정, 평가 및 연구비 배정, 지급중단 등 관리에 관한 사항
- ③ 연구비 지원을 위한 교원 평가에 관한 사항
- ④ 연구비 집행 및 관리와 관련된 중요사항
- ⑤ 교원의 연구 활동에 관련된 사항

## 제3조 (구성)

- ①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위원장은 산학협력센터장으로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한다. <개정 2022.03.04.>
- ③ 위원은 전임교원중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 한다. 다만 교무처장, 기획처장은 당연직으로 한다. <개정 2022.03.04.>

## 제4조 (임기)

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결원으로 인한 후임자의 임기는 결원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## 제5조 (회의)

-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## 제6조 (심의예외)

심의 안건의 시급성 등으로 학술연구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총장의 재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.

## 제7조 (간사)

위원회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산학협력센터 직원으로 한다. <개정 2022.03.04.>

제8조 (회의록의 작성)

위원회는 회의의 일시, 장소, 발언요지,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·보존하여야 한다.

제9조 (경비 등 지원)

- 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② 총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(2019.05.22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9년 05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0.03.30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0년 0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2.03.04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2년 03월 04일부터 시행한다.